

# ○국민건강보험세란?

## 1. 국민건강보험세의 구조

각 시정촌에 있어서 그 연도에 예측된 의료비로부터 국가 등의 보조금과 병원 등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세의 총액입니다. 이것을 다음의 3 개 항목에 할당하여 그것들을 조합하여 한 세대 당 국민건강보험세액이 결정됩니다.

소득할	세대 소득에 따라 산정
균등할	세대 가입자에 따라 산정
평균할	한 세대 당 금액으로 산정

※ 조합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.

※ 40 세부터 65 세까지는 개호보험료도 함께 납부합니다.

## 2. 국민건강보험세 납부 시의 주의 사항

- 국민건강보험세는 연도별로 계산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하는 것은 각 세대의 세대주입니다. (세대주가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, 가족 중에 국보 가입자가 있으면 그 가입자의 보험세는 세대주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)
- 국보 가입 신청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가입 자격이 발생한 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합니다.
- 연도의 도중에 국보에 가입한 경우, 가입한 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합니다.
- 연도의 도중에 국보를 탈퇴했을 경우, 탈퇴한 월의 전월분까지의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합니다.

## 3. 국민건강보험세의 납부 방법

납부 방법으로는 납세 통지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징수(보통 징수)와 연금으로부터의 징수(특별 징수)가 있습니다. 또한, 특별 징수에 관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.

- ① 연금 급부액이 연간 18 만엔 이상인 사람
-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65 세 이상인 국보 세대에 있어서, 세대주가 국보의 피보험자이며,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
- ③ 개호보험료의 특별 징수 대상자
- ④ 개호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세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급부액의 1/2 상당 금액 이하인 사람

☆국민건강보험세 납부는 미납을 방지할 수 있는 '계좌이체'가 편리합니다. 신청은 시정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
## 4. 국민건강보험세를 체납하면

특별한 이유 없이 국민건강보험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세는 납기 안에 반드시 납부합니다.

- (1) 납부 기한을 넘기면 독촉을 합니다
- (2) 1 년 이상 체납한 상태로 의료 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, 의료비 지불 시에 일단 전액(100%)을 부담하고,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국보 담당 창구에 신청하여 보험 급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. 또한, 개호보험의 제 2 호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호보험의 급부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(3) 1 년 6 개월을 체납하면 보험 급부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.
- (4)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정지된 급부액에서 체납분이 공제됩니다.  
※ 재산을 차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## 5. 일본어를 잘 모르겠을 경우

시약소 또는 행정기관의 창구에서는 외국어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담, 신청을 위해 방문할 때는 가능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동반해 주세요.

